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창희 연구위원

정보통신망법의 정비,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지위 격상 및 관리감독 강화,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3법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데이터3법 개정으로 기관 간의 데이터 결합 및 공유가 용이해져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 및 효율 고도화가 수월해지고 관련 학술 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3개 법(데이터3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정법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임¹⁾

-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익명정보 정의 도입 및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허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임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함
- 신용정보법: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MyData) 도입,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제도 도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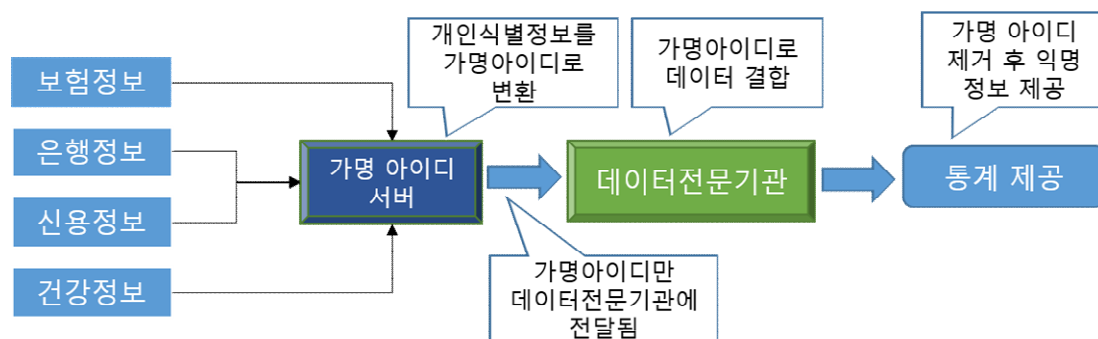
■ 데이터3법 개정 내용 중 보험회사와 관련이 높은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원칙(제3조)이 완화되어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됨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데이터3법이라 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1. 9),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개정안(대안)의 의안번호, 제안자, 주무부처는 각각 개인정보보호법(24495,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법(24491, 과기정통부위원장, 과기정통부), 신용정보법(24492, 정무위원장, 금융위원회)임

-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허용됨
-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함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식별정보 부분을 암호화된 아이디로 대치한 정보임
 - 예를 들어 개인정보에서 개인식별정보 부분인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해시함수(Hash Function)로 암호화하여 생성되는 아이디로 대치하는 경우 가명정보가 됨²⁾
- 익명정보는 개인식별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임
 - 예를 들어 개인식별정보가 없는 개별 신용정보임(주소는 범주화(시, 군, 구만 표시))
- 여러 기관들은 식별정보가 가명정보로 대치된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이들을 결합하여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통계를 의뢰인에게 제공함(그림 1) 참조
 - 개인식별정보가 공유·공개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음
 - 가명·익명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경우 과징금(매출의 3% 이하)이 부과될 수 있음³⁾

〈그림 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결합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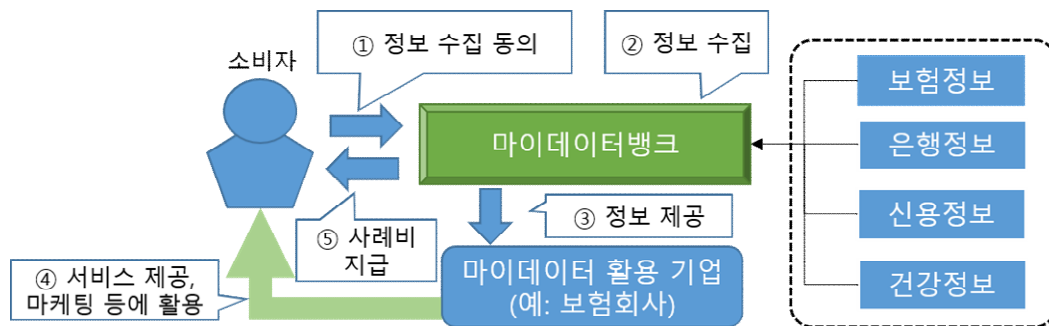
-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도 함)은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하여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임(〈그림 2〉 참조)
 -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정보주체의 정보를 마이데이터뱅크가 집적하여 여러 회사에 제공하고, 정보공개에 동의한 정보주체는 소정의 사례비(현금, 포인트 등)를 제공받음⁴⁾
 - 기업들은 마이데이터뱅크에서 개인들의 정보를 합법적인 경제활동(예: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음

2) 해시함수는 특정 정보를 암호화하는 함수로서 암호화 자료에서 원 자료를 복원할 수 없고(부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함), 입력값이 다를 경우 다른 아이디를 생성함. 예를 들어 ‘이름: 홍길동, 전화번호: 02-1234-5678,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을 입력하면 ‘W2E637FB90377C8B’와 같은 아이디가 생성됨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4495)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마이데이터·인텔리전스, DataCurrent(2019) “個人の健康増進支援をマッチングするヘル스ケア型情報銀行サービスを総務省「情報信託機能活用促進事業」として開始”

〈그림 2〉 마이데이터 사업 모델



■ 기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지고 관련 학술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임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정보 결합이 용이해져 결합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임
 - 정보 결합은 동일한 개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정보가 결합되는 것임(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 데이터와 건강관련 데이터의 결합)
 - 법 개정 이전에는 데이터 결합을 위하여 제3자 제공동의가 필요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 결합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해질 것임
- 보험회사들은 결합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 체계를 개선(세분화)할 수 있음
 - 유병자보험⁵⁾과 같이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함⁶⁾
 - 처방전 데이터와 사망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생명보험 인수심사를 개선한 IntelliScript⁷⁾ 사례와 같이 보험 인수 심사 및 요율 체계 개선이 가능함
 - 가명·익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보험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 요율 세분화 및 인수심사 고도화가 가능해짐
-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빅데이터 관련 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의 경우 기업들이 빅데이터 문제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
 -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들은 Kaggle에 빅데이터 문제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답을 제시한 팀 또는 개인에게 소정의 상금을 제시함(〈그림 3〉 참조)
 -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기업들이 빅데이터 문제와 데이터를 익명정보 형태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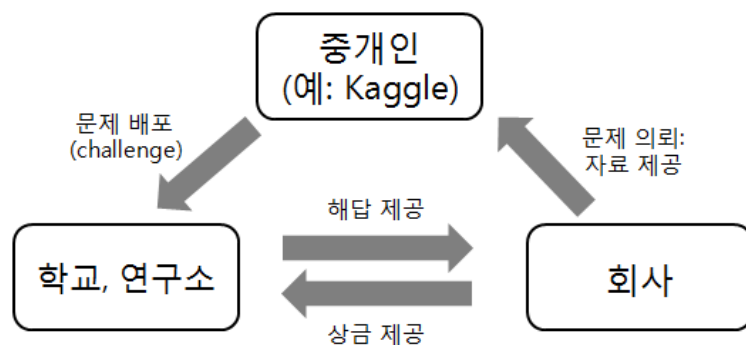
5) 과거 보험회사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병력을 가진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왕증(既往症)이 있더라도 잘 관리될 경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들이 유병자보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6) 최창희·홍민지(201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보험연구원, p. 27

7) 최창희·홍민지(2019), 「전제서」, pp. 33~36

관련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임(Kaggle과 같이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이 가능해짐)

〈그림 3〉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Kaggle 사례



자료: 최창희·홍민지(2019), p. 59

■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보험회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임⁸⁾
 - 단순히 보험 계약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서 보험 계약을 다른 정보(건강(진단·처방전·치료 내역), 자산 현황, 생활 습관)와 결합하여 맞춤형 서비스(예: 건강관리, 연금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
- 보험회사들이 여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음⁹⁾
 -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마이데이터뱅크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자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경쟁적으로 보험계약 분석 및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kiri](#)

8) 현재에도 보험회사 및 대리점들이 보험 비교 및 가입 내역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9) 일본과 유사한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를 가정한 것임